

# 예 산 총 칙

2013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52,717,255	10,581,518
일반회계	321,596,713	9,647,901
특별회계	31,120,542	933,616
기타특별회계	31,120,542	933,616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677,736	50,332
수질개선특별회계	13,445,008	403,35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52,854	19,586
농업소득기금특별회계	2,789,778	83,693
기초생활및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412,603	12,378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2,772,246	83,167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4,105,400	123,162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537,231	16,117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	4,727,686	141,831

제 2 조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서"와 같다.

제 3 조 2013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7,600,000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470,701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분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